

## 통일한국에서 희년법의 위치 -토지문제를 중심으로-

최영우  
(통일논단 편집장)

본 논고에서는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율법의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희년법의 해석문제와 적용범위를 살펴보고 희년법이 통일 한국의 형성과정과 이후의 사회상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희년법에 대한 해석유형과 의미

#### 1) 희년법의 해석 유형

레위기 25장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 희년법은 구약 율법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구약을 통해서 중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성서신학(Biblical Theology)과 조직신학의 체계에서는 희년의 의미가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다.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을 경험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약윤리의 현대적 적용(An Eye for An Eye)”이라는 저서에서 하나님—인간—땅이라는 입체적인 해석구조를 제시하고 있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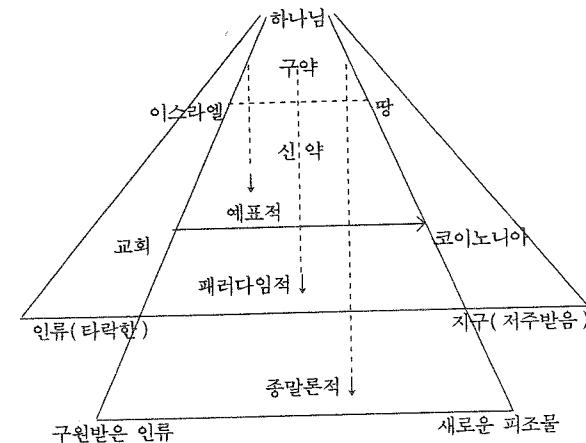
그는 이에 대해서 예표적(Typological), 패러다임적(Paradigmatic), 종말론적(Eschatological) 해석이라는 3가지의 해석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예표적인 해석은 구약 율법을 신약적인 구속원리에 대한 예표로서 파악하고 구속론적인 상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입장을 의미한다. 패러다임적 해석은 이스라엘은 전인류의 대표이며 이스라엘에 주어진 율법은 전체 인류가 따라 살아야 되는 삶의 규범으로서 패러다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입장이다.

패러다임적인 입장에서는 성경적인 율법이 이스라엘에만 아니고 이방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교인들은 세속적인 제도와 체제의 변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출 19:6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는다.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의 중보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이 국

가단위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국가를 하나님께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이방국가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입장은 구약에서의 인간과 땅은 종말에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새하늘과 새땅과 연결된다는 입장이다.

땅과 연결된 희년에 대한 해석도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해석양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약에서 토지무르기를 의미하는 구속(redemption)이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표현이나 “땅을 의미하는 기업이라는 용어가 신약에서는 실질적인 땅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분깃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말에서 예표적인 해석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림 1〉 크리스토퍼라이트의 입체적인 신학모델



자료 : C. J. H. Wright, *An Eye for An Eye : The Place of Old Testament Ethics Today*, InterVarst Press, 1983, p. 100.

종말론적인 접근도 안식일—안식년—희년—하나님의 나라—천년왕국과 같은 점진적인 발전구조로 파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 예표적인 해석이나 종말론적인 해석은 오늘날 널리 퍼져있고 광범위하게 주장되고 있다. 이는 구약성서의 중심적인 주제인 땅의 문제를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주요한 도구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희년에 대한 해석은 패러다임적인 입장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에는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이 고백되는 위치적인 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사와 일반역사를 세밀히 살펴보면 신약시대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희년의 적용형태를 볼 수 있다.

- 자원적 희년
- 러시아의 미르공동체 유형
- 헨리조지적인 경제사상

### 1) 자원적 희년(코이노니아)의 경우

누가복음 4:18~19에 나타나는 ‘주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는 희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신은 초대교회에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사회경제적인 완전한 나눔의 형태로 시행되었다(행 2:44~45, 4:32~35). 대천덕 신부는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2절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온 것은 희년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사야의 이 말들은 ‘새’ 약속의 특성이 돋보일 따름이다. 여기서 다시 강조된 것은 희년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성령이지 백성의 권리가 아니라고 한 점이다.”라고 언급하였다.<sup>9)</sup>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깊은 영성적인 기반 위에서 경제적인 나눔을 실천했지만 구약적인 희년의 양상으로 토지를 무른다거나 원래의 토지에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다. 희년의 실시의 양상이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까지 미쳤고 자원적인 나눔의 형태를 띤 것이다.

이렇게 신약의 성도들이 희년을 적용하는 양상이 구약의 희년과 다른 양상을 띤 것은 당시에 초대교회는 펙박에서의 도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겨다녀야 했기 때문에 정착된 사회에서 적용 가능한 문자 그대로의 희년의 실시는 초대교회에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은 희년의 실시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성서적인 생각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었으며 초대교회 공동체는 소수이면서 펙박을 당하는 무리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독자적인 나눔과 ‘짓는 개<sup>10)</sup>’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이었다. 국가전체가 공의를 실시할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자비를 실천하고 공의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가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기독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로마제국 희년의 법을 실시하는 데에서 만족할 수 있었지만 기독교가 공인되고 심지

어 국교가 되는 상황에서 기독교가 희년법을 중심으로 한 공의의 법을 실시할 것에 대해서 명백히 노력하지 않은 것은 기독교가 현실문제에 대한 직무유기를 한 것에 다름 아니고 이러한 기조로 형성된 신학은 현실문제의 해결책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대천덕신부는 “3세기 동안에 걸쳐서 기독교 신자들은, 자발적인 희년을 지켰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지자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승인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법의 변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 로마가 주전 200년에 카르타고를 정복했을 때, 아랍시대에 이세벨의 친척들이 카르타고를 세운 뒤로 시행한 바알의 토지법이 많은 로마인들의 탐심을 북돋우었다. 세월이 가는 사이에 로마법은 바알법으로 둔갑하여 이탈리아의 불요불굴의 자작농들은, 새로운 지주계급의 땅에서 농노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그 법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sup>10)</sup>

교회사에서 어거스틴의 동시대 사람인 도나투스파의 이단 정죄는 교리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공의를 실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직무유기를 하던 교회가 공의의 실현을 주장하던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인 매장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했다.<sup>11)</sup> 논리적인 면증에서는 당시 정통의 기독교가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기를 거부했던 교회는 결국 그 많은 땅과 신도들을 ‘땅은 알라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슬람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마는 꼴이 되어 실질적인 면증에서는 실패하였다.

따라서 희년의 신약적인 적용 중의 하나인 자원적인 희년(코이노니아)은 일면 희년의 본질적인 정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더욱 철저하게 실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공의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이러한 자원적인 희년은 물질적인 공유와 나눔을 수반하는 공동체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다.

### 2) 러시아의 미르공동체 유형

희년의 정신이 기독교의 공동체 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회의 지도원리로 제시되어 질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내에서는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공동체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의 미르공동체이다. 13~4세기 타타르족의 침입에서 러시아를 건지고 러시아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라도네즈의 수도원장 성세르기우스(1392년 사망)이다.<sup>12)</sup>

그와 그의 제자들은 농민·수도사·개척자로서 러시아의 황폐한 황무지를 개척하면서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한다. 미르(Mir)라고 불리운 이 공동체는 토지를 완전히 공동소유하고 매년 경작권을 갱신한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의 구별이 없을 만큼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당시 미르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이면서도 러시아의 봉건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체사회(alternative society)로서 역할하게 된다. 말하자면 기독교적인 희년사상이 기독교공동체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 것이다. 일반인들은 봉건영주의 영지에서 생활하기 보다는 미르에 소속되기를 바랐고, 봉건영주들과 미르는 일종의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성 세르기우스의 제자들은 후에 비소유파와 소유파로 분리되고 친권력적이었던 소유파가 주류를 형성하면서 비소유파가 교회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러시아 기독교는 다소 침체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미르공동체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해서 19C 후반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국민분유토지로 분류된 미르공동체 소속토지는 러시아의 일부 지방(요록)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토지의 약 1/3을 차지할 만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였다.<sup>13)</sup> 러시아정교가 전제군주의 폭정과 타락에 야합한 관계로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서 진행된 집단농장인 스포즈와 콜호즈에 대해 러시아 공산당이 이것은 미르를 계승한 것이라고 천명한 것에서도 미르의 비중을 엿볼 수 있다.

#### 제정러시아 토지소유상태 (백만 데샤티나)

| 구 분       | 1887년  |
|-----------|--------|
| 농 민 분 유 지 | 131.37 |
| 사 유 지     | 93.38  |
| 관 유 지     | 150.41 |
| 왕 유 지     | 7.37   |
| 기 타       | 8.57   |
| 계         | 391.10 |

자료 : 김준보, 「농지문제와 지대이론」, P. 36.

여기 면적은 요록소재 49개 현에 한정된 것임.

1 데샤티나=약 1.09ha

#### 3) 헨리조지

마스(Marx)와 같은 시대에 미국에서 활동한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1839~1897)는 기술의 발달과 생산성의 증가로 인한 경제의 발전과 동시에 빈곤이 공존하는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구약의 희년사상에서 이끌어 내어 경제학으로 체계화 시켰다는 점에서 현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헨리조지는 그의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이라는 저서에서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과잉의 문제도 아니고 계으름의 문제도 아니며, 다만 하나님께 만인에게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 준 토지를 개인이 사유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공동체에 환원시키지 않고 개인 지주가 착복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헨리조지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세금은 폐지하고 토지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가치세의 실시를 주장했다.<sup>14)</sup>

샌프란시스코의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한 그의 이러한 주장은 구약율법의 현대적 적용이라는 맥락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가 남긴 “Thy Kingdom come”, “Thou shalt not steal”, “Lecture on Moses” 등과 같은 신앙적인 저술들은 그가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가 비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그의 사상을 설득하기 위해서 “진보와 빈곤”에서 직접적인 성서적인 표현을 자제한 것이 그의 사상이 성서적인 기초 위에 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들을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희년사상의 현대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헨리조지의 사상은 러시아의 톨스토이, 중국의 손문, 영국의 처어칠 등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고, 현재에도 대만과 호주, 뉴질랜드,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주에서 실제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러시아의 공산화 이전에 톨스토이는 그의 반생애를 헨리조지의 토지사상을 러시아에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이다.<sup>15)</sup> 심지어 그의 불후의 명작인 부활에서도 헨리조지의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중국에서도 공산화 이전 손문이 주장한 三民主義(民族, 民權, 民生) 가운데서 민생주의의 근간은 地權의 평등과 자본의 절제이다. 지원의 평등에 대한 아이디어는 근본적으로 헨리조지에게서 온 것이다. 손문은 “토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민생문제는 반이 해결됐다고 할 수 있다. 문명적인 도시가 이 地價稅를 실행하면 일반 빈민은 그 부담을 감소할 수 있고 또 갖가지 이익이 있게된다. …땅값에 비추어 매수함을 말함에 있어 한가지 분명히 해두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땅값이란 다만 토지만을 가리켜서의 이야기이지 인공에 의해 개량된 것이라든가 그 이상의 건물들은 계산에 넣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16)</sup> 이러한 손

문의 아이디어는 중국본토에서는 채택되지 못하고 대만에서 실현되게 된다. 말하자면 공산화 이전에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거부하면서 공산화라는 심판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헨리죠지의 사상은 성서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기반이 없는 모든 사람들도 받아들였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영성적인 기반이 없이 헨리죠지의 토지에 대한 대안만을 받아들인 경우도 많이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만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본토에서 쫓겨나게 된 국민당 정부는 대만에서 손문의 유언을 존중해서 헨리죠지 형태의 토지가치세제를 도입했다.<sup>17)</sup> 이러한 결과로 대만의 경제는 어느나라보다 든든하지만 그들의 경제적인 부흥은 기독교적인 영성의 확립과는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헨리죠지가 토지경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낸 성서적인 희년사상에 대한 고려는 없이 토지경제적인 대안만을 국민당 정부가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한 사회가 기독교적인 영성을 견지하지 않더라도 성서적인 법을 채택하기만 하면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적인 영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희년사상에 나타난 토지경제적인 법과 일맥상통하는 토지경제법은 많은 국가의 토지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는 중국의 井田制와 잉카제국의 토지제도 등이다.<sup>18)</sup> 그리고 현재 홍콩이나 홍콩의 제도를 많이 모방한 싱가포르의 토지제도는 우연히 성서적인 희년사상과 일맥상통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것은 홍콩 땅은 1977년에 중국에 반환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소유권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다.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고 개인은 정부로 부터 사용권만을 받아서 적절한 토지세를 부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희년사상을 막시즘적인 시각과 연결해서 자본의 공유라는 형태로 왜곡시켰지만 헨리죠지는 성서적인 원리에 더욱 충실했던 입장에서 토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는데 막스와 헨리죠지가 시험되어진 약 100년이후 이제는 막스의 대안은 실패했지만 성서적인 헨리죠지의 대안은 현실적인 대안인 것이 증명되고 있다.<sup>19)</sup>

### 3. 희년법의 시작으로 본 분단 전후 동북아역사

#### 1) 일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느끼는 일본 역사에 대한 아이러니는 어쩌면 이렇게

철저히 비기독교적인 국가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부흥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그 원인을 일본기독교 신자들은 소수이지만 신실하다는 사실과 일본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라는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희년법의 시작으로 일본역사를 살펴볼 때 1860년 메이지유신을 단행하던 시점과 1945년 이후 맥아더의 군정 아래에서 두번에 걸친 근본적인 토지개혁을 단행하며 성서적인 토지법을 도입했다는 점이 일본경제부흥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일본은 메이지유신기인 1873년(명치 64년)에 地租改正法을 공포함으로써 근대화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것이 단 20년만에 열강의 대열에 끼일 수 있는 국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sup>20)</sup>

전후 맥아더하에서 일본농촌의 공산화를 우려한 일본정부는 1945년 12월 농지조정법 개정안을 성립시켜 제1차 농지개혁에 착수하였다. 1949년경까지 거의 완료된 농지개혁의 결과 소작지의 80%가 해방되어 전 농지 중에서 차지하는 소작지의 비율은 46%에서 13%로, 소작농은 전 농가의 28%에서 8%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자작농은 28%에서 55%로 증대했다. 다만 임야는 개혁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또한 경영의 영세성이 개선되지 않는 등 몇가지 문제를 남겼으나 지주제는 거의 해체되었다.

농지개혁의 결과 농민은 토지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농민조합은 투쟁목표를 잃고 급속히 쇠퇴해 갔다. 농지개혁은 비군사화의 의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농민운동을 해체시키는 점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sup>21)</sup> 이와 같은 토지개혁은 일본의 전후 경제재건의 가장 실질적인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한가지 사실을 덧붙인다면 역시 맥아더하에서 미국의 통계학자인 디밍(Deming)을 중심으로 도입된 경영관리의 아이디어(기독교적인 노동윤리를 기반으로 함)가 일본에서 품질관리(Quality Control)로 발전하면서 일본경제 성장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기독교는 이러한 성서적인 경제법의 도입이 일본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자연스럽게 일본경제의 성장이 신도이즘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공동체성에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해석은 일본의 기독신앙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런 악한 영성적인 흐름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 중국

일본이 토지제도를 정비하고서 근대화를 단행한 것과는 달리 중국은 청말(淸末)에 지속되어오던 토지소유의 편중과 이로 말미암은 공동체성의 파괴에 대해서는 조금의 변혁도 없이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근대화를 이룬다. 이러한 영향으로 청일전쟁(1894)에서 중국은 일본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 같은 중국의 경제사회적인 모순에 대해서 당시에 중국에 전파되던 기독교는 침묵했다. 다만 후에 사교집단으로 타락하고 파멸해 버린 태평천국의 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의가 선포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태평천국의 난을 주도하였던 洪秀全은 어느날 밤 “救世濟民”이라는 계시를 보고 기독교에 입문하였으며 홍콩에 들른 미국인 목사 로버츠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上帝會라는 신앙결사를 만들어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들의 모토중에 ‘有田同耕(밭이 있으면 함께 경작한다)’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근본적인 사회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성서를 통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 선교사들은 태평천국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중국정부에게 진압을 종용하여, 약 14년간 18성을 유린하고 600여 성을 함락시킨, 중국역사상 가장 대규모이고 장기전이었으며 중국현대사 전개에 다양한 영향을 제공하였던 태평천국은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된다.<sup>22)</sup>

그러나 이들의 사회개혁적인 아이디어는 孫文에게로 연결되고 손문을 통해서 헨리조지의 사상과 결합되어 중국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삼민주의의 이름으로 중국역사에 제시된다.

1890년 말 외세와 특별히 기독교 배척운동인 의화단사건을 경험하면서 중국의 기독교는 1906~1927 사이에 중국토착교회운동과 중국 독립교회운동을 냥게 된다.<sup>23)</sup> 이들은 서양선교사나 외국교단의 모든 지원을 거절하고 독자적인 기독교를 형성해 나간다. 특히 이들 중에 한 그룹인 중국의 예수가정은 서양기독교가 결여하고 있는 경제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공동생활과 코이노니아를 실천했다. 이들은 중국의 공산화를 대비한 하나님의 정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성서적인 토지제도의 시행이 좌절된 이후 1949년 10월 1일 중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공산정권이 수립되고 1950년 본격적인 토지개혁을 시작해서 1950년대 말에 이르면 토지의 완전 국유화 내지 협동농장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중국의 토지는 공동체성을 상실한 채 집체화되어진다. 이러한 경향은 토지의 생산성에 급격한 저하를 가져왔다. 그러나 1978년 등소평이 정권을 잡고 개방을 추진하면서 부터는 농촌토지가 가

정단위로 사용권이 이양되고 그 토지에서 생산된 산물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유 뿐만 아니라 거래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토지사용권의 사유화 경향은 도시토지로도 확산되고 현재에는 도시사용권에 대한 거래시장까지 생긴 실정이다.<sup>24)</sup>

현재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예수가정 멤버의 수는 약 4~5천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은 향후 중국의 사회 경제적 활력에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3) 러시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오랜 기독교의 전통과 특히 성세르기우스를 중심으로 한 미르공동체라고 하는 희년사상에 입각한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18, 19C 짜르의 전제정치와 농노들의 고통이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러시아의 본질적인 문제는 토지의 문제라고 본 사상가는 톨스토이였다. 그는 헨리조지의 처방책이 당시 등장하고 있는 20C의 정의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기초라고 생각하고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토지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권력있는 자들에 대해서 막힌다. 교회도 토지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짜르에 영합한다.

결국 러시아는 1917년 공산화되고 모든 권력있는 자들은 권좌에서 쫓겨나고 지주의 권세에 영합하였던 교회는 심각한 팝박을 경험하게 된다. 1928년 토지사유금지령이 발표된 이후 1933년까지는 농업의 집단화가 거의 완성되는 등 모든 토지는 국유화되고 인민들의 자유는 박탈을 당한다. 결국 지금은 수십년에 걸친 공산주의 실험에서 실패한 옛 소련의 붕괴이후 현 러시아공화국의 대통령인 옐친을 중심으로 서구화가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사유화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나 세계은행(WORLD BANK)은 토지소유권도 완전사유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sup>25)</sup> 이는 명백히 러시아 혁명전의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헨리조지협회의 경제전문가들은 러시아에 토지소유권 공동체가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에게 자유로운 토지사용권을 제공하고 토지가치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방정부의 관리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바 있지만 국제 헨리조지협회의 회원들이 영적인 접근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접근에 치우쳐서 러시아정교회나 러시아의 각종 교회에 하나님의 토지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서 러시아로 파송된 선교사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 4) 한반도

극심한 토지소유의 모순을 가지고 있던 구한말에 일본에 의해 강점당한 후 처음으로 토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한반도는 해방을 전후해서 전국적으로 토지소유가 편중되고 광범위하게 진행된 소작제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었다.

1907년 이후 진행된 강력한 부흥운동의 물결로 대표되는 한국기독교의 영향도 하나님의 희년법을 실시하는데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북한지역의 기독교는 토지소유의 모순적인 상황에 실제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공산화를 맞아서 남하한 선도들을 중심으로 남한의 기독교의 부흥이 이루어진 측면은 무시할 수 없으나 북한 성도들과 고통을 같이 하지 않고 모든 목자가 남하한 점과, 북한성도의 남하와 더불어 시작된 교회의 분열은 깊이 회개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1946년에 3월 5일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이 발표되고 당장 시행되었다.<sup>26)</sup> 그리고 6.25사변을 일으켰던 북한은 1950년 7월 4일에 “공화국 남반부지역에 토지개혁을 시행함에 관하여”라는 법령을 발표할 만큼 남한 지역의 모순에 대해서 깨뚫고 있었다. 물론 해방이후 미군정의 영향과 체제유지에 대한 고려로 6.25사변이 일어나기 2개월 전에 농지에 대한 토지개혁이 시작되었다. 정치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러한 사실은 남한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남한의 병사들은 이제 자기의 땅을 위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에서 토지개혁이 일어난지가 올해로서 약 48년, 남한에서 토지개혁이 일어난지가 약 44년이 흘렀다. 희년의 주기로 말하자면 다음 희년의 선포가 가까운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희년이 가까운 때가 되면 그 사회는 공동체 파괴현상이 극도로 심화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북한은 집체적인 토지국유화를 이루어 왔고 남한은 무책임한 토지의 개인소유가 점증되어왔다. 북한의 집체적인 토지제도는 북한 농업생산력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고 북한경제를 아사 직전으로 만들고 있으며, 남한의 경우는 총 경제활동 인구중 3%가 전 민유지의 65%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토지소유의 편중은 극심한 상태이고 1974년 이후 1991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5배가 증가한 반면 땅값의 지수를 의미하는 지가지수는 19배가 증가해 심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sup>27)</sup> 그리고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990년 한해에 지가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은 약 291조 8천억원으로 국민총생산의 1.7배, 총피용자 보수의 3.7배, 일반 정부재정규모의 6.2배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8)</sup> 이는 남한의 경제가 불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에서 지속적으로 토지문제에 대한 성서적인 대안을 제시한 분은 R. A. TORREY 목사의 손자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이다. 그는 남한기독교에 성서적인 토지제도에 대한 일깨움을 주어 통일과 동북아시아에 의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신앙적인 기반을 만들어 두신 것으로 평가된다.

#### 4. 통일한국을 위한 희년법의 적용

희년법은 통일의 과정과 통일한국의 사회경제체제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가? 통일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주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통일의 필수요소인 남북한 체제의 동질화
- 북한 경제의 회생방안과 통일관련 비용의 문제
- 통일과정에서 북한선교
- 통일한국의 체제문제
- 동북아시아에서 복음적 기독교의 역할

##### 1) 체제의 동질화문제 – 희년법의 공의의 측면

양한(兩韓)은 약 50년간 전혀 상이한 체제하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비교적 자기의 체제에 대한 이념교육이 철저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이한 체제구축의 근간은 양한의 토지제도에 있다. 상이한 양체제의 통합과정에는 독일의 경우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남한의 제도가 우월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남한의 누구도 현체제에 대해서 완전한 만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 자본주의가 그 완전한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닌 까닭이다. 우리는 제3의 길을 성경의 희년법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sup>29)</sup>

남한과 북한의 토지법은 공히 변해야 한다.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야 한다. 남한의 토지제도는 무절제한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건물분 재산세는 점점 낮추고 토지분 재산세는 높이는 방향으로의 토지가치세를 중과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지대에 대해서는 100% 과세해서 토지를 보유하는 것 만으로는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하도록 해서 정상적인 토지사용을 격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상적인 기반은 성경의 희년사상 외에서는 찾을 수 없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성서적인 희년사상에 근거해서 토지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은 남한 교회의 일부 뿐이다.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의 기독교신자들은 이러한 경제적인 개념이 없는 상황이다. 토지에 대한 공동체적인 사용에 대한 기반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본주의적인 활력(노동과 자본의 활력)이 사장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헨리조지의 토지사상은 사회주의라기 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적인 활력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토지제도는 집체적인 국유화를 극복하고 사적인 사용권을 부여해서 공동체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개방이 중국식을 따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치는 사회주의를 고수하되 경제는 개방하는 중국식 개방정책을 북한이 따르더라도 북한의 경제개방정책과 중국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지제도에 대해서는 중국식의 모델을 북한이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아직 중국의 토지소유권은 굳건히 정부가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1978년 당사오평의 등장 이후 중국의 농지는 개인가정에 도급형식으로 불하되어 사적인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어 중국농업 생산의 급격한 증대를 가져왔다. 현재는 도시토지도 개인이 사용권을 받으면 일정 정도의 토지세를 내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토지사용권에 대한 거래시장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토지 소유권이 지방정부에 이관되고 토지사용권을 민간에게 불하해 주면서 토지사용의 댓가를 부과해 토지가치세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토지문제를 정비해갈 경우, 소위 말하는 통일비용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문제가 된 통일비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 동독 토지의 원소유주에 대한 토지가치의 보상이었다.

## 2) 민간일치운동－회년법의 자비의 축면

공의의 법을 양한(兩韓)에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와 실질적인 노력은 다해야 한다. 그러나 손앞에 잡히는 구체적인 섬김과 나눔의 문제를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회년의 자비의 축면이다. 수년동안 타지 피를 방황하면서 품팔이를 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기업,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올 때 그 지역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비의 법을 실천해야 했다. 곧 자기의 창고를 열고 나누어야 했다. 교회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 성도를 자기의 가족처럼 대하고 서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통일과 관계된 두 가지 자비의 법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헤비타트운동에 대한 동참이다. 헤비타트는 1972년 미국 코이노니아 농장에서 주변의 흑인들의 집을 지어주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운동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42개국에서 가난한 사람과 파트너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벌여서 매년 약 1만채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수년전에 조직

되어 현재 의정부에서 목사님들의 연합체를 중심으로 결실단계에 있다.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해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둘째, 통일적금에 대한 동참이다. 현재 영동교회를 중심으로 몇몇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통일의 과정이나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미리 자유적금의 형태로 적금을 들자는 것이다. 명의는 개인의 이름으로 하고 아이들까지 동참하는 것은 통일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sup>30)</sup>

## 3) 영적인 각성－회년법의 공동체적인 하나님의로 사상

이 모든 변화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사상과 방안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없이는 회년(은혜의 해)의 선포가 없다. 그리고 온전한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

히브리서 1:3에서 예수님은 그 능력의 말씀( $\lambdaγμα$ )으로 만물을 불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 $\lambdaγμα$ , 만물을 불들고 있는)이 우리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리라”고 하셨다.<sup>31)</sup>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논다’라든지 ‘레져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만물을 불드시고 만물안에서 만물을 충만케하시는 예수님의 그 역동성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본체의 역동성과 이에 대한 동참이 모든 질서회복의 원동력이 된다. 많은 영적인 각성이 경제사상의 뒷받침없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기반을 둔 영적각성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통일한국을 맞을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새로운 사상이 태동될 것이다. 하늘의 힘이 남한의 온 교회에 임하여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필자약력 : 1965년 경남 의령산

고려대학교 무역학과와 동대학원 졸업

KIET(산업연구원)의 연구원과 한국헨리조지협회 간사역임

현 통일논단 편집장, 통일318기도회와 예수사회영성운동 연합을 섬기고 있음.

### ◆ 각 주

- 1) C. J. H. Wright, *An Eye for An Eye : The Place of Old Testament Ethics Today*, InterVarst Press, 1983.
- 2) C. J. H. Wright, 같은 책, p. 101.
- 3) 고왕인, “기독교신학의 본체론적 접근”,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통합연구학회자료집, 1992. 8.
- 4) 고왕인, “토지와 연관된 성경적 세계관 : 삼본의 정경사상(三本의 政經思想)”, 「목회와 신학」, 1993년 9월호.
- 5) B. F. Smith, *Land in History*, Mimes, Henry George Institute of America, pp. 19~26.
- 6) 앙드레 뜨로그메, 「예수와 비폭력 혁명」, 박혜연·양명수 공역, 한국신학연구소, 1986 등에 나타나 있는 입장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뜨로그메의 희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는 비교적 실재적이지만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상이 희석되고 희년사상을 자본의 공유로 이해해 막시즘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 7) 대천덕, 「토지와 자유」, 무설, 1989.
- 8) 대천덕, 같은 책, p. 63.
- 9) 이사야 56 : 10.
- 10) 대천덕, 같은 책, p. 67.
- 11) 휴스토, L. 곤잘레스, 「초대교회사」, 서영일 역, 은성, 1987/H. 브로벤드, 「순례하는 교회」, 전도출판사/대천덕, “교회의 회개”, 「더불어 함께」, 도서출판 예수원, 1993, p. 15 등을 참고하라.
- 12) 니콜라스 째르노프, 「러시아 정교회사」, 위거찬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pp. 55~64.
- 13) 김준보, 「농지문제와 지대이론」, 한길사, p. 36.
- 14) 헨리조지, 「진보와 빈곤」, 김윤상 역, 무설, 1989.  
Fred Harrison, *The Power in the Land*, Universe Book, New York, 1984 등을 참고하라.
- 15) David Redfearn, Tolstoy : *Principles for a New World Order*, Shepheard-Walwyn, 1992.
- 16) 손문, 「삼민주의」, 이명구 역, 삼성미술문화재단, 1972와 대천덕·고왕인, 「두채제를 잊는 가교」, 무설, 1989을 참고하라.
- 17) Wei-Shin King, “Land Value Taxation in Taiwan : Present Status”, *Rand Property and Land as Tax Base for Development*, Land Reform Tranining Institute for Taiwan, 1992, pp. 209~211, 참고로 대만의 토지개혁훈련원(Land Reform Tranining Institute)은 미국의 헨리조지협회와 대만정부가 합작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제3세계에 헨리조지의 토지경제사상을 전파하고 대만의 토지개혁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의 많은 공무원들이 대만의 토지개혁훈련원에서 연수한 바가 있다.
- 18) B. F. Smith, 같은 책.
- 19) Fred Harrison, 같은 책 참고.
- 20) 김용덕, 「일본 근대사를 보는 눈」, 지식산업사, 1991, pp. 106~112.  
Land and Liberty誌, Land and Liberty International, London, 1992년 7~8/9~10

### 월호 참조

- 21) 후지와라 아카라외 3인, 「우리가 알아야 할 일본의 현대역사 1945~1991」, 노길호 역, 명진출판, 1991, pp. 48~49.
- 22) 이춘식, 「중국사 서설」, 교보문고, 1991, pp. 489~499.
- 23) 통일논단, 4호, 1993. 12. 25.
- 24) 최수용, 「중국의 토지사용제도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 25) 통일논단, 3~4호, 1993. 10. 3/12. 25.  
Land and Liberty誌 Land and Liberty International, London, 1993년 5~6월호 참조.
- 26) 황의각, 「북한경제론」, 나남, p. 47.
- 27)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중간연구보고서」, 1989. 4  
건설부, 92년도 분기별 지가동향, 1992. 4.  
통계청, 주요경제지표, 1991.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 1992. 5.
- 28) 이성욱, “부동산세제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세계개혁의 과제와 방향」, 한국조세연 구원, 1993. 4.
- 29) 고왕인, “통일희년을 향한 한국교회의 프로그램 및 교회의 실제 적용”, 「목회와 신학」, 1993. 1월호와 대천덕·고왕인, 같은 책을 참조하라.
- 30) 통일논단 3호(1993. 10. 3) 참조.
- 31) 요한복음 15 : 7.